

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

#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록 제1호(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

## 부 록 목 차

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..... 2면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대상 조례

의안 번호	의 안 명
1257	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2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7. 5.(화)
- 나. 제 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2.(화)
- 마. 입법예고 : 2016. 7. 4. ~ 7. 8.(5일간) (의견 없었음)

## 3. 제안이유

- 가.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일반 상임위원회 정수와 같이 5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며,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변경 (안제2조)
  - 의회운영위원회 6명 ⇒ 5명으로 조정
  - 다른 상임위원회 정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.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

## 5. 근거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, 제62조
- 나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## 6. 검토의견

- **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는**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 6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,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 중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현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와 같이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7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중 “6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“건설도시국소관에”를 “건설도시국 소관에”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 중 “복지경제국소관에”를 “복지경제국 소관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(상임위원회위원)”을 (상임위원회 위원)으로하고, “상임위원회위원”을 “상임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총선거후”를 “총선거 후”로, “폐회기간중에”를 “폐회 기간에”로, “다음회기”를 “다음 회기”로, “전일까지”를 “전날까지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상임위원장에서”를 “상임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”를 “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”로 하며, “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”을 “2명 이상이면 그중”으로, “이경우”는 “이 경우”로, “사유없이”는 “사유 없이”로,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폐회중에는”을 “폐회 중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은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 “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”을 “2명 이상이면 그중”으로, “사유없이”는 “사유 없이”로,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3항 중 “있을 때에는”은 “있을 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 제1항 중 “이유없이”는 “이유 없이”로 하며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소속상임위원”을 “소속 상임위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 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」 ”을 “ 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부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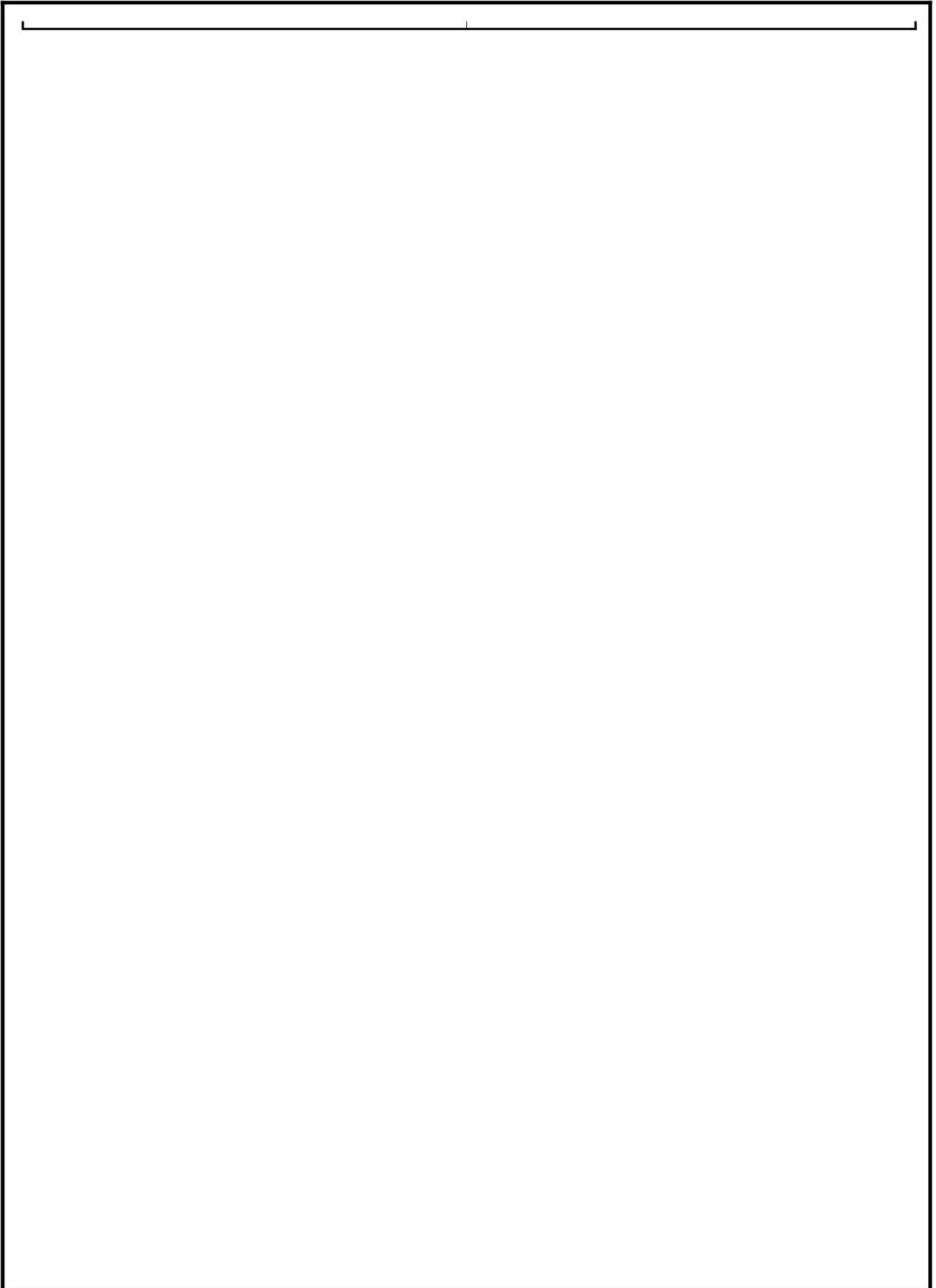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	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
<p><b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</b>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<u>원</u> <u>원정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6명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5명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 5명</p>	<p><b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</b>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<u>원</u> <u>정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5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b> ① 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의회운영위원회 가.~다. (생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바. (생략)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 가. <u>건설도시국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나. <u>복지경제국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</p>	<p><b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의회운영위원회 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 가. <u>건설도시국 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나. <u>복지경제국 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</p>
<p><b>제4조(상임위원회위원)</b>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<u>위원회위원</u>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</b>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<u>위원회 위원</u>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</b>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후</u> 처음 선임된 <u>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</u> 만료된 때에는 <u>다음회기에서</u> <u>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</u> 재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</b>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 후</u> 처음 선임된 <u>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에</u> 만료된 때에는 <u>다음 회기에서</u> <u>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</u> 재임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략)</b>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<u>상임위원장에서</u> 1명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<u>위원중에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u>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</u>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(생략).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</u>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<u>상임위원회에서</u> 1명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 중에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u>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</u> <u>정당한 사유 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(생략).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</u>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
<p><b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b> ① (생략). ② <u>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</u>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중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생략)</p>	<p><b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b> ① (현행과 같음). ② <u>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</u>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중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<u>정당한 사유 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② (생략)</b>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<b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b>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

8 (제188회-의회운영위 제1차부록)

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</b>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<u>정당한 이유없이</u> 직무를 수행하지 <u>않을 때에는</u>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<u>소속상임위원 과반수</u>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b>제13조(준용)</b>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준용한다</p>	<p><b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</b>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<u>정당한 이유 없이</u> 직무를 수행하지 <u>않을 때는</u>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<u>소속 상임위원 과반수</u>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3조(준용)</b>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준용한다</p>

## [관계법령]

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